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28 발의연월일: 2021. 10. 22.

발 의 자:진성준·강병원·김정호

박상혁 • 박찬대 • 박홍근

우원식 • 위성곤 • 이동주

천준호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발생한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 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 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

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해당하는 법인"을 "해당하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공시행자 또는 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를 "제10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공공시행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의 공공시행자 외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0분의 10 이내로 하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선정 방법, 협약의내용 및 총사업비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 제11조(시행자 등) ① ---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 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 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 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 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후단 신설> 해당하는 법인. 이 경우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 자"라 한다)가 출자에 참여하 여 설립한 법인의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 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②・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 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 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 함할 수 있다.

	총/	나 약	불비	의	10)()\frac{1}{1}	분의	1	.0	0]	내
	로_	하	며,	구	공	시	행기	} :	외	사	업
	<u>자</u>	의	선?	정	방	법,	협	약	의	내	용
	및	30	들사	업1	刊	산	정	방스]	등	에
	대경	s}-¢	부는	- 1	대통	투령	궝.	Òį	2	정	한
	<u>다.</u>										
2	• (3	(현	. 행	과	같	음)				
$\widehat{4}$) -										
	<u>-</u>	공급	당시	행.	자	또	는	제.	1항	·제	11
<u></u>											
	- 										
-											
_							_				
							•				
_											

- ⑤ (생략)
-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 호부터 제1호까지(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 ⑩ (생 략)
- 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10호까지의</u>
⑦ ~ ⑩ (현행과 같음)
① 공공시행자